

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공원녹지과)

1. 제안이유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(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비용부담금의 체납처분 조항) 신설에 따라 납부 기간을 조례에 반영 신설(안 제18조제2항)
- 나. 「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8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(안 제18조 제1항, 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’는 조문이 신설되고 2025년 6월 시행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